

#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6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1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정사유

-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농촌용수계획 수립 (안 제5조)

-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
-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

나.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 (안 제9조)

- 운영관리위원회
  -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
  - 용수구역 개발,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
- 군 위원회
  -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,취합
  - 용수구역 개발, 관리보전, 계획수립 추진

다.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(안 제18조)

-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
-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.
-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.
-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.

## 3. 참고사항

-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(농어촌용수에 관한 정의)
-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(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례제정)
- 도농지51353-11537(2000.9.27)
  - 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 따른 조례제정 촉구(조례제정 표준안)
- 입법예고 (고성군 공보 제87호) - 결과 의견내용 없음

## 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개발·이용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.

제2조(농촌용수구역)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.

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
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 점유역을 포함한다.
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
2.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
3.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
4.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
5. 농촌용수시설의 관리
6.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, 학술단체,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농촌용수공급,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·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·보완할 수 있다.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유발시설의 개선·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,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 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·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

2.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

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8조(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)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별표서식에 의하여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1. 용수구역 :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
2. 군 관할구역 :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

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관리위원회 :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,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
  - 가.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
  - 나.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
  - 다.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
  - 라.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
  - 마.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2. 군 위원회 :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, 취합,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, 관리보전, 계획수립 추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한다.

1.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.
3.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,업무를 총괄하게 한다.

②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한다.

1.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2.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 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.
3. 군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4.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 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1. 운영관리위원회 : 매분기 1회

2. 군 위원회 : 반기 1회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4조(회의록)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심의 조정사항의 준수)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일당 및 여비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규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
2.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
3.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
4.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

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, 기간, 구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.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0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,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## 수리시설관리대장(제8조관련)

관리자 : 고 성 군 수

\_\_\_\_\_지구 수리시설 관리대장

(Code No.            )

# 지 구 평 면 도

(S = 1 / )

“위 치 도”

“전 경 사 진”



# 시 설 개 요

1. 설치사업명 :

2. 행정 구역 :

3. 구역 면적 : ha

4. 동리 면적 : ha

5. 설치 경위

가. 설치확정승인 : 년 월 일

나. 사업시행승인 : 년 월 일

다. 사업 기간 : 년 ~ 년 ( 개년)

라. 조사측량설계기관 :

마. 공사감독기관 :

바. 시 공 회 사 :

사. 인 · 허가사항 :

인 · 허가 분야	인 · 허가 기관	인 · 허가 일자	비 고

6. 주요 제원

가. 수원공(           지)

위 치	유 역 면 적	관 개 면 적	저수량	단 위 저수량	만 수 면 적	제 당			
						구조	높이	길이	체적
	ha	ha	m'	m/m	ha		m	m	m'

여 수 토 방 수 로					통 관		
형 식	통 수 량	일류수심	연 장	방 수 로	형 · 규격	통수능력	연 장
	m'/sec	m	m	B= m L= m		m'/sec	m

취 수 시 설				비 고
형 · 규격	연 장	취 수 공	취 수 량	
	L m H m	= N m = D m	= m'/sec	

나. 평야부

내역	구분	계		용수로		배수로		부기
		용수로	배수로	간선	지선	간선	지선	
연장(A)		조/m	조/m	조/m	조/m	조/m	조/m	단위용수량 m <sup>3</sup> /sec
토공(B)								
구조물(C)								
비율C/A×100								단위배수량 m <sup>3</sup> /sec
구조물	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
터널	터널	개소 m	개소 m	개소 m	개소 m	개소 m	개소 m	
	암거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
	잠관							
	수로교							
	개거							
	낙차공							
	분수문							
	방수문							
	기타							
소계								
횡단	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

7. 설치사업비 내역  
(수입)

단위: 천 원

구분	계	보조	기채	자부담, 양곡, 기타	비고
					금액은 준공사업비 기재

(지 출)

단 위 : 천 원

구 분	계	순공사비	지급품비	개담비	용지매수보상비	측량설계비	공사감독비	관리비	비고

8. 연도별 개보수 내역

단 위 : 천 원

공 종 년.월.일	수 원 공		평 야 부		계	비 고
	사업비	내역	사업비	내역		

9. 연도별 시설물 변동 현황

구 분	년. 월. 일	시 설 현 황			변 동 사 유	비 고
		준 공	현 재	차 인		
물리면적 제당제원 여 수 토 방 수 로 사 통 복 통 저 수 량 내 용 적						※ 저수량은수량 변동사항을순 별 파악기재

10.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

년. 월. 일	점 검 구 분	자 격 구 분	점검(진단)자 소 속·성 명	공 종	점검 (진단) 주 요 사 항	조 치 결 과	
						년. 월. 일	내 용

11. 주요 재해발생사항

발생 년. 월. 일	재 해 구 분	내 용